

영등포구의회
제204회 임시회

『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0. 23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79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인 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”를 「지방자치법」 제 152조제2항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기 위해 「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의 사업(안 제3조)

-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, 프로젝트 평가
-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,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

나. 협의회 구성(안 제4조)

- 정회원(자치단체)과 준회원(정부기관, 연구소, 민간기관 등)으로 구성

※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

다. 의장 도시, 부의장 도시,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(안 제10조)

라.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

(안 제15조, 안 제17조)

마.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·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
구성(안 제18조)

바.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

(안 제25조 ~ 안 제27조)

사. 수입·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

나. 예산조치: 2017년 예산편성(회비 2,000,000원)

5. 검토의견

○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임의단체인 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”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에 따른 법정 행정협의회로 구성하기 위해 회원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법정 행정협의회의 절차적 요건이란,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 “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” 하여야 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
- 동 규약의 주체인 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”는 2006년 설립 하여 2017년 4월 현재 전국 8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정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, 이 중 서울시 자치구는 21개구가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기구이며, 우리구도 2009년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.

○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명칭, 협의회 목적, 협의회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에 회원의 구성 및 자격, 안 제5조에 가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25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연회비 등 협의회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.

○ 검토결과,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 인 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”의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기

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에 따라 상정되었으며, 동 법 제154조(협의회 의 규약)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,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
- 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- 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

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